

(별표 1) 대학교원 자격 기준

학력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	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	전문대학졸업자·동등자격자		
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교수	3	4	7	4	6	10
조교수	2	2	4	3	4	7
조교	근무하고자 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자					

비 고

1. 이 표 중 대학은 사범대학·교육대학을, 전문대학은 방송통신대학(전문대학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말한다) 및 종전의 교육대학·초급대학·전문대학·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.
2. 연구실적이라 함은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관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 또는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에 해당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력을 말한다.
3.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